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9. 3.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재정국 재무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1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금천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공작물 설치 건임

[설치 재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소재지	주요시설	소요예산	비고
1	금동초교 내 구릉지 이동편의개선사업관련 공유재산(공작물) 취득	시흥동 1013-1 (시유지)	·수직형E/V : 2.4m*2.4m 높이 약32m ·보도교량 : 연장55.7m, 폭3.0m	1,917	

가.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 (도로과)

○ 사업목적

- 벽산5단지아파트의 주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주민들은 통행편리를 위해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금동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을 통한 통행로로 15년째 출입을 하고 있음. 학교는 통행을 위해 24시간 개방을 해야 하며 학습권 침해 등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어 주민과 학생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동선 조정이 시급함

○ 설치대상 : 이동편의시설 (수직E/V, 보도교량)

○ 사업비 : 1,917백만원 (공사비 1,709백만원 용역 208백만원)

4.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동초 내 이동편의개선사업’ 관련 공작물 취득 건임.

나. 검토결과

1)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개선사업관련 공유재산 취득(도로과)

○ 재산의 표시

[설치 재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소재지	주요시설	소요예산	비고
1	금동초교 내 구릉지 이동편의개선사업관련 공유재산(공작물) 취득	시흥동 1013-1 (시유지)	·수직형E/V : 2.4m*2.4m 높이 약32m ·보도교량 : 연장55.7m, 폭3.0m	1,917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2. 6월

※ 설계용역 1월 시행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1013-1 금동초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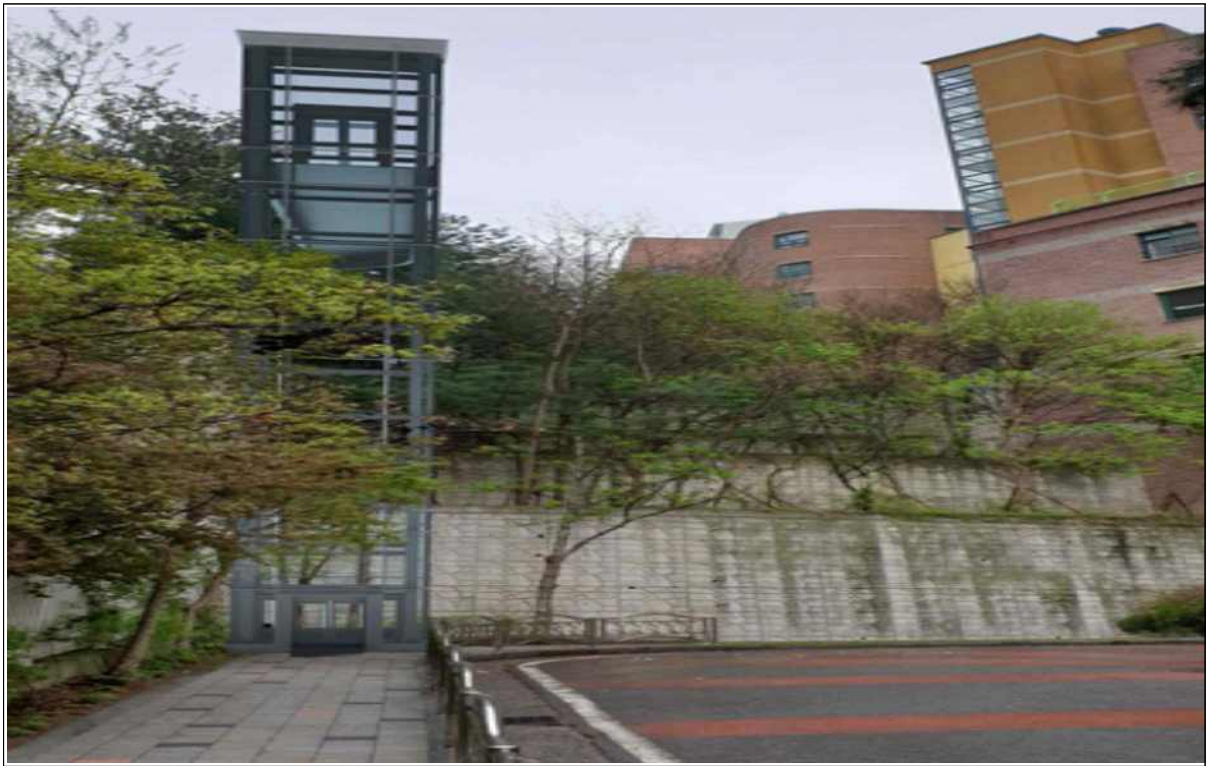
- 주요시설 : 수직형엘리베이터, 보도교량

- 소요예산 : 총 1,917백만원(공사비 용역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검토결과

- 관악벽산5단지 아파트의 주민들은 주 출입구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편의시설과 거리가 가깝고 이동 동선이 편리한 금동초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통행로를 15년째 이용중에 있으나 금동초 입장은 학습권 침해 및 24시간 개방에 대한 보안문제 등의 사유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금동초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 주민공모¹⁾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부교육지원청 및 금동초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²⁾를 통해 금동초 내에 벽산 아파트 주민 출입을 위한 수직형엘리베이터와 보도교량을 설치 하여 주민통행로와 학생통학로를 분리하는 사업임
- 경사가 심한 통행로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이동 불편 개선 및 학습권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주민 편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1) 2020. 1. : 서울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주민공모 공고

2020. 4. : 서울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 대상 선정

2) 2020. 4. ~ 6. : 금동초교, 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

2020. 7.29. : 금천구-남부교육지원청-금동초교간 사업추진 협약체결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